사립학교법 개정안·로스쿨법 제정안 국회 통과

회기 종료 3분 남기고

3당 원내대표 진통 끝 합의…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3일 진통 끝에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과 로스쿨법 6월 국회 처리' 합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두 법안의 연계처리 방식에 대한 시각 차로 이날 오전만 해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학법을 재개정하고 로스쿨법은 교육위까지만 통과시킨 뒤 법사위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은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3당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교육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의식, 오후 5시30분께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 두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3당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요구를 위해 임채정 국회의장을 찾아갔으나 이 자리에서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와 의견을 한 번 더 조율한 뒤 직권상정을 논의하자"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우리당이 의총을 통해 두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 당론을 정하면서 논란은 끝이 났다. 우리당 의총에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2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합의 아닌 표결을 통해 직권상정 처리 방침이 확정됐다.

3당간 직권상정 합의가 이뤄지고 임의장이 이를 수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노당 의원들은 밤 11시께 농성장소를 교육위에서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옮겼다. 민노당 당직자 20여 명과 전교조 교사 10여 명도 본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고 본회의장으로 난입하려던 일부는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회기 종료 30분을 남기고 실무자가 만들어온 사학법 재개정안 수정안이 원래 의도했던 '김형오안'이 아닌 '이은영안'에 대한 수정안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다시 바꾸느라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결국, 회기 종료 9분 전 가까스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직권상정됐고 이용희 국회 부의장은 민노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단 5분여 만에 두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사립학교법 무엇이 달라졌나

개방이사 추천에 종교재단 참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역시 '개방형 이사'의 선임 방식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로 극한 대립 속에 진행돼온 사학법 재개정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과 사학재단의 반발이 여전해 이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재개정안은 사학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사학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위원회)가 5인 이상의 홀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2분의 1은 학운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이사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에서 임명하게 한다. 개정 사학법은 학운위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한 뒤 재단이 임명하게 했지만 재개정안은 추천 과정에서 이미 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에 재개정된 사학법은 당초 개정안에서 사학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금지시켰던 학교 법인 이사장의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이 삭제되고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이 승인하면 이사장의 친인척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학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 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사학법 재개정 주요 내용

	개정사학법	사학법 재개정안
개방이사	이사의 1/4 학운위 2배수 추천 후 재단이 임명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 1/4을 재단과 학운위에서 과반수로 구성해 2배수 추천하면 재단에서 임명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금지	허용(형식적으로 이사회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 단서)
이사장의 다른 사학 이사장·학교장 금지	금지	허용
학교장 임기	4년 임기에 1회 중임 제한	중임 제한 철회
임시이사 임기	임기 삭제	3년으로 임기 부활
대학평의원회	심의 기구	심의기구 유지하되 교육과정, 대학헌장 논의시 자문기구 역할

국민연금법 통과

연금개혁 논란에 종지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급여율 2028년 40%로 낮아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랜 연금 개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3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경고하며 '덜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개혁방향이 바뀐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로 유지되는 대신 급여율은 현재의 60%에서 내년에는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 40%로 낮아진다. 대신 내년부터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9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급여율이 2028년까지 10%로 인상된다. 수급자 범위도 2009년 60%에서 70%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8년부터 연금 급여율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을 포함해도 현행 제도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20% 감소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급여율이 10% 높아지므로 전체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가 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40%로 3분의1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을 버는 소득자가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기존 체계 하에서는 월 18만원(근로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고 월 54만원을 받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연금액이 36만원으로 많이 줄어든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급여율(10%)에 따라 18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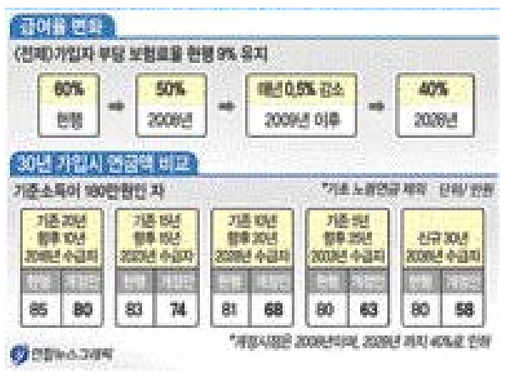

월 100만원 소득자는 수급액이 49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적어지는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 받는 연금 총액도 줄어든다. 현행 제도에서 연금 총액은 1988년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의 4.4(월소득 50만원)~2.0(월소득 360만원)배, 1999년 가입자 4.1~1.7배, 2008년 가입자 4.2~1.8배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8년 가입자는 4.4~1.7배, 1999년 가입자 4.0~1.4배, 2008년 가입자 3.7~1.3배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로스쿨법 시행… 법조인 되려면

학사학위 → 로스쿨 → 변호사 시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8개월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이다.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의장 등은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인가 심사 및 인가기준 심의,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 심의 등을 담당할 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이든 타 학과이든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선발시험 역시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뀐다.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 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 선발절차

현장과 시각

은행들, 서민대출 좀 하시죠

장 필 수
경제부 차장

최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폐해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시행전에는 연 수백%에 달하는 사채금리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요즘에는 이자 상한선이 연 66%로 제한되다 보니 그때에 비해 폐해는 덜하지만 선이자(선취 수수료)를 과도하게 뗀다거나 '무이자'를 내세운 대부업체에 현혹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설치된 '소비자보호센터'에는 하루평균 5~6건의 사금융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한 상담자는 부모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는데 월 10%의 이자에다 선이자로 75만원을 떼 1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에서 영업중인 대부업체수는 등록업체만 552개이고 미등록업체까지 포함하면 1천8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 1분기에만 전남지방경찰청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60명에 이르는 것을 보더라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담보물이 없는 서민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사금융 업체(대부업체) 순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사금융으로 갈수록 금리는 높아진다.

광주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최저 5.85%에서 최고 13.95%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6~15%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20%, 캐피탈사는 30~40%대다. 신용대출을 받기위해 은행부터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 직업이 없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란 쉽지 않다. 고금리를 알면서도 이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유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은행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선 은행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광주은행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그룹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지역내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우려해 개인 신용대출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주 수입원인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가 2.94%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증권사들의 CMA(자산관리계좌)에 돈이 몰리면서 은행들이 자금이탈을 막기위해 고금리 특판예금을 앞다퉈 내놓은 결과다.

2009년이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은행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서민금융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때다.

/bungy@kwangju.co.kr